



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 4. 22.] [조례 제2267호, 2026. 4. 22., 제정]

경상남도 김해시(감사관(조사팀)), 055)330-303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고충민원"이란 김해시(이하 "시"라고 한다)와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.
2. "신청인"이란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"소속기관등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
 - 다.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

제3조(설치) 김해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
2.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3.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4.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6.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7.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8.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
9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
-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
-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고충민원의 처리 등)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9조(사무기구)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

제10조(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)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김해시의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지원) 시장은 위원회가 제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부칙 <조례 제2267호 2026.4.2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